KSD 한국예탁결제원

자산관리플랫폼 정보이용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참가자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원 등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자산관리플랫폼을 통한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주문 결과 확인 등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 자산관리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제반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산관리플랫폼"이란 참가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주문 결과 확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투자매매업자등"이란 참가자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하여 참가자가 매매주문을 지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거래내역등"이란 투자일임재산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지시한 경우 그 매매주문에 따른 거래내역, 입출금·입출고내역 및 잔고내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약정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하위법규, 지침 및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약정서의 변경) ① 예탁결제원은 필요한 경우 이 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변경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한다.

② 참가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준수)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이 자산관리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지침,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업무처리 관행 및 조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내역등의 수령 및 제공) ① 예탁결제원은 참가자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하여 참가자가 매매주문을 지시한 투자매매업자등으로부터 거래내역등을 제공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내역등을 제공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거래내역등을 그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제6조(정보제공의 요구 등) ① 예탁결제원은 거래내역등의 수령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참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등-1-432 210mm×295mm
2025.8.27. 백상지70g/m²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거래내역등의 수령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거래내역등의 제공 중단)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에 대한 거래내역등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참가자가 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 약정에 따른 거래내역등의 제공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참가자가 3회 이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
3.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역등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8조(거래내역등의 진위에 대한 책임 등)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참가자에게 제공한 거래내역에 관하여 참가자는 그 거래내역등의 진위와 그 정확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에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식한다.

제9조(수수료) ① 참가자는 이 약정에 따라 거래내역등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지침 별표에 따른 자산관리플랫폼이용수수료를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수수료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역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참가자는 그 수수료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이 약정을 해지하려는 참가자 또는 예탁결제원은 해지하려는 날의 1개월전까지 그 사실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참가자 또는 예탁결제원의 파산·해산,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자가 지체없이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의 해지는 그 해지시까지 발생한 참가자와 예탁결제원 간의 채권·채무와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한도) 이 약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참가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발생일 직전 1년간 이 약정에 따라 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예탁결제원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예탁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전산장애나 통신수단의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
2.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참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3조(비밀유지) 참가자와 예탁결제원은 이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성실히 유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공개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할법원)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관할법원은 예탁결제원의 주사무소(예탁결제원의 정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청일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

당_____은(는) 예탁결제원이 이 약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거래내역등의 수령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호(또는 명칭) :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 (인)